

의안번호	2216535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6. 2. 6.
추계번호	26B066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벌칙) 제2항 삭제	<u><삭제>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u> ※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삭제	의무규정
	안 제29조(과태료) 신설	<u>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u> ※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7조(벌칙) 제2항 삭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29조(과태료) 신설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1]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수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수단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고,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²⁾,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1)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